
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 국토교통부 | | 보도참고자료 | |
| | | 배포일시 | 2018. 4. 13(금) / 총 5매(본문2) |
| 담당 부서 |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| 담당자 | ·과장 정의현, 사무관 곽영필, 주무관 강경훈 ·☎ (044) 201-4244, 201-4245, 201-4247 |
| |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| 담당자 | ·과장 윤종길, 주무관 백태용 ·☎ (064) 797-1703, 797-1742 |
| 보도일시 | |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| |

「정부, 제주 열기구 사고...허술한 안전기준 도마에」 등 보도 관련

□ 사업등록 관련

- 제주지방항공청은 오름열기구투어가 '16.9월부터 3차례 사업등록 신청에 대하여, 이륙지점 8곳 중 4곳은 비행경로 주변의 송전탑·풍력발전기 등 장애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반려한 사실이 있으며,
- '17.4.14일 4차 등록신청 시에는 1·2·3차 신청 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4곳은 제외하고 안전지역으로 확인된 4곳만 신청하여, 현장실사('17.4.19) 후 '17.4.20일 최종 승인하였음


□ 허술한 안전기준 관련

- 정부는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기구 운영과 관련 5단계 (①비행장치 신고, ②기체 안전성인증, ③조종사증명, ④사업등록, ⑤비행승인)의 검증을 받는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으며,
- 사업등록 이후에도 업체가 허가사항과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점검(연1회)과 필요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

- 동 사고 열기구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정기점검(‘17.6.27) 및 특별점검(‘17.8.8)을 각각 실시한 바 있음
-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라, 사고열기구에 대한 안전성인증검사를 수행(검사기간 : ‘17.7.12~14, 결과 : 합격)하였음

< 보도내용(KBS, 연합뉴스, 파이낸셜뉴스, 4.12) >

- ◆ 정부, 제주 열기구 사고 긴급 조사...허술한 안전기준 도마에(KBS, 연합뉴스)
- ◆ ‘자유비행’ 열기구 추락사고 잇달아 “우려가 현실로”(파이낸셜뉴스)
 - 감독기관인 제주지방항공청도 1년에 1차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뿐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정책과 광영필 사무관(☎ 044-201-4245), 제주지방항공청 윤종길 안전운항과장(064-797-170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고개요

- (時/所) '18.4.12.(월) 08:12분경/서귀포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
- (경위) 와산리 운동장 이륙(07:35) 후 35분가량 비행 후 송당목장 착륙 단계에서 사고 발생 추정
 - *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(사고조사관)에서 사고원인 조사 중
- (인명피해) 사망 1명, 경상 12명(귀가 5명, 퇴원 2명, 입원 5명)
 - * 서귀포의료원(1명), 제주대학교병원(3명), 서귀포열린병원(1명)
- (보험가입) 1인당 1억5천만원, 1사고당 18억원 보장('18.3.19 가입)
 - ※ 최근 열기구 사고 : 강풍으로 추락 7명 부상('18.2, 호주), 강풍으로 추락 1명 사망 12명 부상('18.1, 이집트), 고압선 충돌로 추락 16명 사망('16.8, 미국) 등


□ 조치사항(4.12)

- 감독관(제주지방항공청) 및 사고조사관(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) 현장 출동
-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(제주지방항공청, 064-797-1715)
 - 소방서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고 수습

□ 향후계획

- 추락사고 원인 조사(사조위, 제주지방항공청, 국과수)
- 기구류 75대*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실시(지방항공청)

* 서울지방항공청(64대), 부산지방항공청(7대), 제주지방항공청(4대)

| 신고사항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신고부호 | S5001Y | 등록연월일 | 2016.07.08 |
| 등록업체 | (주)오름열기구투어 | 사업구분 | 항공레저스포츠 |
| 열기구 현황 | | | |
| 제작사 | Cameron Balloon LTD | 형식 | Cameron Z-275 |
| 제작연월일 | 2016. 06. 10. | 제작일련번호 | 11627 |
| 구피체적 | 7,788 m ³ | 최대이륙중량 | 2,494kg |
| 항속거리 | - | 순항속도 | 풍속 |
| 탑승가능인원 | 17명 | 안전성인증 | '17.07.14~'18.07.21 |
| 비행제한 사항 | | | |
| 풍속 | 15knots 이상 | 돌풍 | 10knots 이상 |
| 버너(Burner) | | | |
| 연료 | LP가스 | - | - |
| 열기구 사진 | | | |
|  | | | |

□ **안전제도**

- (비행장치 신고)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장치의 종류 및 용도 등 신고(지방항공청)
- (안전성 인증)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라 사업용은 연 1회, 비사업용은 2년에 1회 안전성인증 검사 수행(항공안전기술원*)
 - *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(전문인력 포함)는 '17.11.4일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
- (조종자 자격)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라 유인자유기구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취득(한국교통안전공단)
- (비행 승인)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* 외에서는 사전에 비행계획 승인(지방항공청)
 - *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(드론전용구역 제외) : 공주 등 전국 21개소
- (조종자 준수사항)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종자 준수사항*에 따라 비행
 - * 야간비행 금지, 안개 등으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불가 시 비행 금지 등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는 행위 금지
- (안전감독 활동)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, 안전증진을 위해 필요 시 특별점검 실시(지방항공청)

□ **기구류 신고현황**

| 구분 | 신고 대수 | 사업자 보유대수 | 개인·동호회 보유대수 |
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서향청 | 64 | 8 | 56 |
| 부향청 | 7 | 4 | 3 |
| 제향청 | 4 | 2 | 2 |
| 계 | 75 | 14 | 61 |

※ 사업자 등록현황 : 총 11개(서향청 7, 부향청 2, 제향청 2)